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74 발의연월일: 2025. 2. 19.

발 의 자: 강득구·강경숙·김교흥

김 윤 · 김준혁 · 문대림

민병덕 • 송재봉 • 이학영

전재수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,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·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서울의 한 시장에서 운전 중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수시 적성검사 대상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

고,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·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9조제1항 및 제90조).

법률 제 호

#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제1항 중 "경찰청장에게"를 "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"로 한다.

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할 수 있다"를 "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9조(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	제89조(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		
정보의 통보) ① 제88조제1항	정보의 통보) ①		
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			
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			
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			
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			
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			
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			
정보를 <u>경찰청장에게</u> 통보하여	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		
야 한다.	<u>에 경찰청장에게</u>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제90조(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	제90조(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		
사람에 대한 조치) 한국도로교	사람에 대한 조치)		
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			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82			
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			
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			
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			
야 전문의(專門醫)의 정밀진단			
을 받게 <u>할 수 있다</u> .	<u>하여야 한다</u> .	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